

재미 있게 풀어 본 상호 이야기

상호는 그 점포의 얼굴이자 첫인상이다.

우리가 잘생긴 사람이나 첫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먼저 호감이 가듯

상호가 멋진 점포로 발길이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전 경영전략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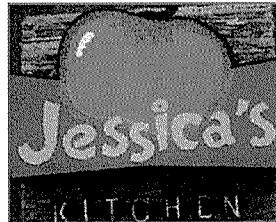
‘실패한 점포의 10가지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로 거론된 것이 바로 구식상호였다.

이처럼 상호는 한 점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호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지는 현재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상호 중 재미있고 좋은 의미를 지닌 상호를

선정하고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기타 관련 지식을 소개한다.



Contents

베스트 컬렉션

1. 눈에 띄는 '좋은' 상호
2. 눈에 띄는 '재미 있는' 상호

상식 보파리

1. 실전상호등록,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2. 특허청에 등록된 제과점 관련 상호

눈에 띄는 '좋은' 상호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좋은 상호는 점포의 이미지를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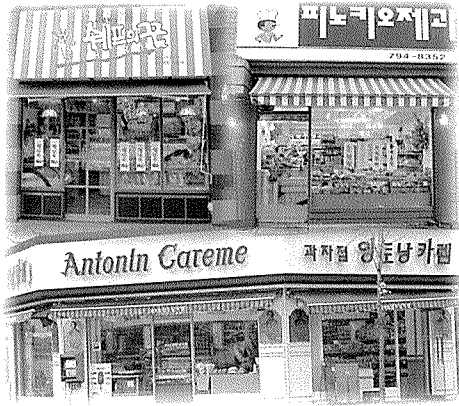
알기 쉽고 의미가 깊은 '좋은 상호' 18개를 선정해 게재한다.

■ 취재 / 박종선

본지는 좋은 상호의 선정을 위해 대한제과협회 회원 업소를 대상으로 삼았다. '좋은 상호'를 선정하는 데는 수치나 통계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지가 좋다고 생각한 상호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것이 좋은 상호라는 생각에서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나 알 정도의 어려운 상호는 배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외국어 상호의 경우 웬만한 사람들이면 알고 있을 법한 정도의 상호 중 빵이나 빵의 본고장 등을 연상시키는 의미를 지닌 상호를 위주로 선정했다.

이밖에 발음 및 어감이 좋지 않거나, 많이 알려진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호, 의미는 좋지만 전국에 10개 이상이 존



재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상호 등은 배제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좋은 상호를 선정했지만 이들 상호의 대부분이 2~3개 이상의 점포에서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누가 해당 상호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특허청에 상호를 등록했거나 먼저 그 상호를 사용한 것이 정확할 경우에만 상호

명과 대표자명, 점포의 위치, 작명 동기 등을 조사해 게재했고 나머지 상호는 본지에서 선정 이유를 밝히고 그 상호가 지닌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했다. 아울러 특허청에 등록된 상호를 타 점포에서 사용하면 소송을 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특허청의 상호 등록 여부'를 함께 표시했다.

양토낭 카렘

- 대표자: 신 현
- 위치: 성남시 분당
- 작명 동기: 데커레이션케이크와 공예 과자를 발전시키는 등 큰 발자취를 남긴 프랑스 제과 기술의 창시자 양토낭 카렘(1784~1833년)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했다. 양토낭 카렘의 명성이 의미하듯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이들 제품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좋은 상호로 채택했다.

소리 파파

- 대표자: 이재찬
- 위치: 부천시 상동
- 작명 동기: 딸 아이의 이름인 '이솔'에서 평소 부르던 대로 '소리'라는 말

을 채택하고 아빠라는 뜻의 영어인 '파파(PAPA)'를 합쳐 '소리 아빠'라는 의미의 상호를 작명했다. 한글과 외국어를 합성한 상호이지만 소비자가 외국어인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빵굽는 셰프의 꿈

- 대표자: 채동현
- 위치: 동작구 사당동
- 작명 동기: 프랑스어인 셰프는 '우두머리', '주방장' 등의 뜻이 있으며, 이외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만 셰프라는 호칭이 부여될 정도로 가장 뛰어난 기술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점포 즉 '빵굽는 셰프'로서 소비자에게 항상 좋은 제품을 공급한다는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에서 작명하게 됐다.

• 비고: 특허청에 상호 등록

나눔과 배움

- 대표자: 강호문
- 위치: 동작구 흑석동
- 작명 동기: IMF에 들어설 즈음에 개업하게 됐는데 모두들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이런 상호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명하게 됐다. 또한 점포에서 팔고 남은 빵을 사회 복지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잘 부합해 상호를 채택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작은 정성이나마 베푼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비고: 특허청에 상호 등록

밀돌레베이커리

- 대표자: 박희수

• 위치:노원구 상계동

• **작명 동기:** 상호를 짓기 위해 다른 점포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 외국어 또는 외래어 상호로 되어 있었다. 우리 점포만은 한글로 상호를 짓고 싶어 빵의 원료가 되는 '밀'에 국어 사전에서 찾아낸 방식이라는 의미의 '뜰레'를 합성해 '밀방석'이라는 의미의 상호를 작명했다.

흥부네 빵집

• 대표자:조용기

• 위치:제주시 일도2동

• **작명 동기:** 흥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친숙한 인물인 탓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작명 때 고려했다. 또 흥부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점포가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희망과 흥부가 지니는 풍성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상호로 채택했다.

빵 아저씨 쿠키 아줌마

• 대표자:안광선

• 위치:송파구 마천동

• **작명 동기:** 독특한 이름의 상호를 지으려는 의도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아저씨와 아줌마의 이미지를 점포명에 활용했다. 아저씨는 푸근한 이미지로 제품 중 빵에 적합하고, 아줌마는 예쁜 이미지로 제품 중 쿠키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보나베띠

• **선정 이유:** '보나베띠'란 프랑스어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뜻을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보나베띠'라는 말은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보았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편이다. 전국적으로 8~9개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상호가 지닌 '맛있게 드세요'라는 의미가 좋아 선정했다.

유로팡베이커리

• **선정 이유:** 빵이 유럽에서 전래된 만큼 그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점포가 유럽이나 파리 등 지명을 상호로 활용하고 있다. 유로팡(EURO PAIN)을 해석하면 '유럽의 빵'이라는 좋은 뜻을 지니고 있다. 이 상호는 현재 전국적으로 4~

5개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에게 유럽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선정했다.

봉쥬르과자점

• **선정 이유:** 프랑스어인 봉쥬르는 영어로는 '굿 모닝', 우리말로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아침 인사말이다. 프랑스어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하다. 그러나 이 상호를 사용하는 점포가 그리 많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점포명이라는 점에서 선정했다.

마이스터과자점

• **선정 이유:** 독일어인 마이스터는 뛰어난 기술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다. 따라서 제과점으로서의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좋은 단어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면 알고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말인데도 이 단어를 상호로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상호 사용의 회귀성과 말이 지닌 의미가 좋아 선정했다.

파리빵스

• **선정 이유:** 유럽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한 제과점의 노력은 파리바게뜨, 몽블랑(제품명) 등 지명 및 제품명의 복합 또는 제품명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차원에서 파리빵스는 말 그대로 '파리의 빵들'이라는 평이한 복합어지만 유럽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선정했다.

몽마르뜨

• **선정 이유:** 프랑스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누구나 한번쯤 가 보았으면 하는 동경의 대상인 몽마르뜨를 상호로 사용한 케이스. 이 상호는 몽마르뜨 언덕을 연상케 하는 흔하고 좋은 상호인 데도 제과점에서 점포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가 드물어 선정했다.

피노키오

• **선정 이유:** 아동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점포명도 좋은 상호가 될 것이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점점 길어지는

피노키오를 연상케 하는 이 상호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을 때 누구나 책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주인공인 피노키오를 상호로 사용한 케이스다. 인지도가 높고 상호 사용의 예도 많지 않아 본지에서 좋은 상호로 선정했다.

피터팬

• **선정 이유:** 피노키오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에게 친근한 주인공인 피터팬을 상호로 채택한 케이스다. 악당인 후크 선장을 상대로 용감무쌍한 무용담을 펼치는 피터팬의 이야기는 아동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친숙한 대상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높다. 이런 이유와 함께 전국적으로 상호 사용의 예도 많지 않아 선정했다.

*비고:특허청에 상호 등록

빵공장 과자창고

• **선정 이유:** 빵과 과자가 만들어지는 제과점을 의미하는 이 상호 자체는 단순하기 짝이 없다. 빵과 과자라는 단어 뒤에 각각 공장과 창고라는 공간을 뜻하는 단어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곰곰이 이 상호를 새겨 보면 빵 내음이 가득하며 맛있는 과자가 가득 쌓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상호로 선정했다.

빵이랑 케익이랑

• **선정 이유:** 제과점은 빵과 과자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이를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 상호는 나열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이랑'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해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고 있다. 이 상호를 자주 읽다 보면 예쁜 빵과 케이크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상호로 선정했다.

이삭과 허수아비

• **선정 이유:** 영성하게 만들어져 유스광스런 모습의 허수아비는 우리의 들뜬 마음에 존재하는 친숙한 대상이다. 그런데 이 상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수아비와 황금빛 이삭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던 그리움의 존재와 고향의 아늑함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상호로 선정했다.

눈에 띄는 '재미있는' 상호

우리의 제과점들은 어떤 종류의 재미있고 기발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재미있는 상호' 40개를 선정해 보았다.



'불타는 삼겹살(식당)', '타는 목마름으로(주점)' ...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호를 통해 사람의 눈길을 끌어 모으는 것도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과점들은 어떤 종류의 재미있고 기발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본지

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업소 중 '재미있는 상호'를 선정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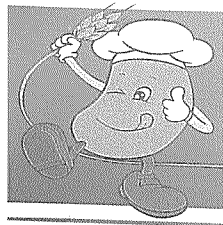
이번 조사의 목적인 '재미있는 상호' 역시 수치나 통계 등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재미있다고 생각한 상호를 본지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누구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한글 상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정된 상호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 빵집 및 즉석 제조를 강조

'빵빵빵베이커리', '빵파라(팔아) 빵빵', '와! 빵집이다', '굽고 찌고' '빵글래(빵 구울래)' 등 빵집임을 직설적으로 알리거나, '바로바로베이커리', '바로 군 빵과자점', '직접 빵을 굽는 집' 등 즉석 제조임을 강조.

■ 점포 부흥 및 활발한 구매를 희망

'억만당(億萬堂)', '아우성베이커리', '와자지꼬제과', '불티나' 등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빵 사부러', '또또와제과', '참새와 방앗간', '사라 베이커리', '온동네 빵파티' 등 활발한 구매를 희망하는 뜻을 담음.



■ 뛰어난 점포임을 강조

'베테랑베이커리', '빵빵한제과점(실속있는)', '소문난 제과점', '모드 조아(모두 좋아)', '원빵 아저씨(최고)', '으뜸미아마시왕(으뜸이야 맛이 왕)' 등 자신의 점포가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

■ 기타

이밖에 소설 '장발장'과 만화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장발장의 빵 훔치는 집', '호빵맨'의 상호를 비롯해 점포주의 이름을 가미한 '빵굽는 평한이', '강현이가 만드는 빵집' 그리고 '다 드림제과', '소쿠리제과' 등 푸짐하게 제품을 준다는 의미를 강조.

상호	대표자	상호	대표자
빵빵빵베이커리	이강학	온동네 빵 파티	마귀현
으뜸미아 마시 왕	정익자	와 빵집이다	이용문
빵 파라 빵빵	최창수	바로 군 빵과자점	윤석돈
빵굽는 평한이	문평한	직접 빵을 굽는 집	배재권
원빵아저씨	이이레	빵 사부러	한문수
강현이가 만드는 빵집	이강현	굽고 찌고베이커리	김정숙
장발장 빵 훔치는 집	정위진	진짜과자점	김동구
빵 글래	김봉규	지금은 빵 굽는 중	김영일
아빠와 빵순이	장봉래	빵빵한제과점	김기찬
소문난제과점	황용수	호빵맨	한상복
다 드림베이커리	김윤철	모드 조아	육명자
엔돌핀	나순옥	또또와제과	최봉찬
참새와 방앗간	김정성	아줌마제과	이창화
사라베이커리	이근석	베테랑베이커리	양영운
바로바로베이커리	박광희	불티나	조영미
구수한베이커리	김덕기	억만당	정무진
소쿠리제과	서현숙	사또제과	이인숙
김서방빵집	박현희	아우성베이커리	유상렬
빵 굽는 꼬마	김홍승	와자지꼬제과	전복남

실전 상호 등록, 이것만은 알아둬시다

상호 등록과 보호에 관한 Q&A

서울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는 L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근 제과점의 P사장이 상표권 분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제과점도 특허청에 상호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동안 고민하던 L씨는 마침 제과점 인테리어를 새로 바꿀 시기가 된 터라 이 기회에 근사한 상호를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상호를 등록하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했다. L씨는 고민끝에 상호 등록과 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물박사 배이커리씨를 찾아갔다. 다음은 L씨가 배이커리씨와 상담한 내용이다.

■ 취재 및 구성 / 김경옥



상호를 등록하고 싶은데 제과점 상호 등록은 어떤 권리에 해당합니까?



제과점 상호와 관련된 권리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표권은 다시 상표와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상호는 서비스표에 해당합니다. 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영업상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상표가 상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서비스표는 업(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과점에서 상호에 관한 독점적 권리만 행사하고 싶다면 자신의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되고 그 상호명을 포장지에 붙이는 권리도 행사하고 싶다면 상표 등록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등록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호 등록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등록할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몇 가지 상호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호라도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상표법상 등록 불가 요건 또는 유사 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상호에 대한 검색은 특허청 민원안내실이나 자료실, 상공회의소, 국공립도서관에서 가능하지만 등록이 불가능한 상호인지,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특허청에는 무료 상담을 해주는 변리사가 있습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예 : 비누→비누)
- (2)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예 : 사과→대구, 2쪽)
- (3)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 런던, 뉴욕, 동경)
- (4) 흔히 있는 성·명칭만으로 된 상표 (예 : 김씨, 이씨)
- (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 사각형, 육각형)
- (6) 기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7) 국기·국장,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8)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 (9)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0)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1)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12)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 (1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4)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5)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6)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7)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8) 널리 알려지거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19)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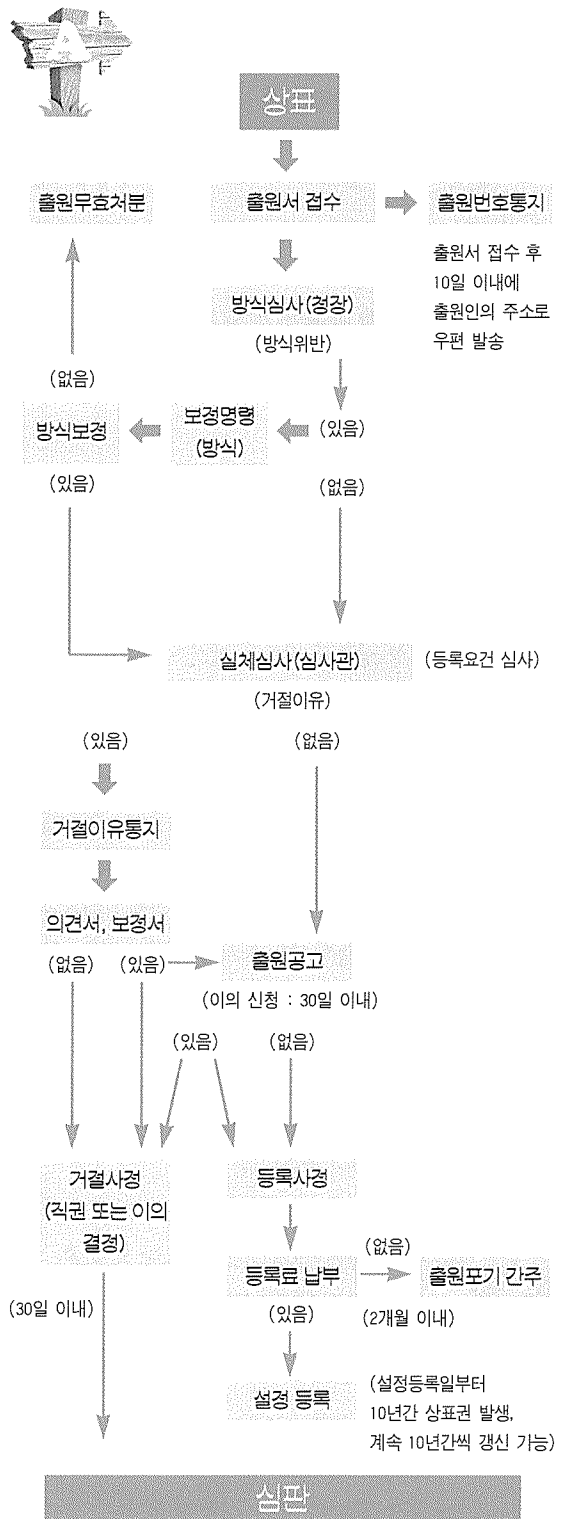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호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호 등록시 위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나 뉴욕제과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점포라는 사실이 인정돼 정식 상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 상호 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우선 출원전에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 코드 부여 신청서(반드시 인장 날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원 서류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도장과 출원서 2통(정본 1통, 사본 1통), 상표 견본(A4용지에 가로·세로 7cm 네모칸을 그리고 그 안에 견본 부착) 정본 1통·사본 3통, 출원비 6만 7,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10년분 등록료 21만 1,000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기간 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개 하자가 없을 경우 심사를 처리하는 데 출원을 기점으로 약 10개월 정도

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0년 이상 상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10년마다 갱신출원을 해야 하는데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갱신 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상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등록한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상표권을 타인이 침해했을 경우 민사적인 조치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인 조치로는 '침해예방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돼 '상호중지가처분'이나 '상표침해물품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한편 형사적인 방안으로는 상표법 제 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죄가 성립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적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 침해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한곳에서 30년 가까이 동일한 상호로 제과점을 경영했는데 얼마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등록한 상호와 유사하다며 상호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에서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등록한 자만이 권리를 가지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상호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상표권이 유효한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즉 침해한 사람의 상표권 등록 원부를 검토하여 상표권 존속 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효, 취소가 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호변경을 요구한 시점에서 3년간 그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사용한 상호와 상대방의 상호를 비교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의 지정 서비사업과 자신의 업종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 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앞서 밝힌 것처럼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그 상호가 등록될 수 없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통 명사나 성질 표시 등 등록될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면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소송이나 취소 심판 등의 특허심판은 특허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표권 분쟁의 경우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다른 사람이 상호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는 증거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사항이나 인지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간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광고나 지역 주민들의 서약이 필요한데 자영업에서는 이런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 특허청 서울 사무소 : (02) 568-6074 / 8155~7
- ▶ 특허청 종합 민원실 : (042) 481-5220~3
-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kipo.go.kr>

하나 더! 전자출원은 이렇게

특허청은 99년부터 특허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출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1) 출원인 코드부어 신청서 제출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특히 출원인 코드는 온라인 접속을 위한 접속코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출원인 코드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정부청사 특허청 민원실에 출원인코드부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 때 출원인의 인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은 서면(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2)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제출 및 전자출원소프트웨어 CD-ROM 수령

특허넷을 이용해 전자출원을 할 경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인장날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장대신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또한 제출서류의 유출방지 및 보안을 위해 암호화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위한 각 출원인의 전자서명키의 생성 및 등록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가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다.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민원실에 제출하면 전자출원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가 담긴 CD-ROM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설치 및 전자 서명키 생성

CD-ROM의 매뉴얼 폴더에 사용안내서가 파일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4) 전자서명키 인증요청 및 공개키보증서 수령

생성된 전자서명키 중 출원인의 공개키는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인증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인증된 공개키보증서 파일의 등록 및 보관

6) 출원서류의 전자문서 작성

전자출원소프트웨어로 각종 출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CD-ROM에 포함된 사용자 안내서를 참고해 각종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7) 전자문서의 온라인 전송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한 후 온라인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를 전송하면 된다.

특허청에 등록된 제과점 관련 상호

㉑	<p>가나슈베이커리 / 가나제과 / 가나안제과 / 고려당 / 고려제과 / 고려베이커리 / 고려빵집 / 골드밀베이커리 / 과자점부케도로 / 꼬띠디엥 / 꼬레두앙 / 꼬마떼 / 꼬메도 / 꼬메뜨 / 콩뽀뽀뜨 / 구드프랑스 / 구라파과자점 / 궁전제과 / 그린하우스 / 금마차 / 금자탑베이커리 / 기린 / 김경태빠띠제리 / 김동곤베이커리 / 김충복과자점</p>	㉒	<p>아마또네 / 아로마 / 아비앙토 / 안데르센킵빵 / 안델센 / 앙드레쿠키전문점 / 앙베르베이커리 / 앙브레뜨 / 앙주 / 앙프로망 / 에또와르 / 에델만베이커리 / 에델바이스 / 에펠 / 엔젤리오 / 엘리제 / 엠마 / EMPIRE / 여명제과 / 영국빵집 / 영풍제과 / 예스터데이 / 오랑제리 / 오봉팡 / AUBONPAIN / OUBONPAIN / OLIVE / 옴스 / 워싱턴제과 / 육삼베이커리 / 육삼콘티베이커리 / 은마차 / 이딸리앙베이커리 / 이마리크라상 / 이성당 / 이태리안크라상 / 임채순베이커리</p>
㉓	<p>나눔과 베품 / 노엘 / NOEL / 뉴가나안제과 / 주식회사 뉴욕제과 / 뉴코아제과 / 뉴코아빵</p>	㉔	<p>조선밀제과 / 조훈모과자점</p>
㉕	<p>따베오 / 데이앤데이 / 덴마크베이커리 / 델리스 / DELIPLAZA / 델리하우스 / 도준베이커리 / 돈주앙 / 동명양과 / 동큐 / 주식회사 동큐제과 / 동키호테 / 동화속의 케익 / 두리브르 / 뚜레마땡 / 뚜레쥬 / 뚜레쥬르 / 뚜레푸레 / 뚜쥬루제과 / 드빵드</p>	㉖	<p>추러스</p>
㉗	<p>로빈훗 / 로즈 / 로즈마리 / 라델리앙 / 라미드빵 / 라스텔라 / 란앤드앙주 / 레베도로 / 레인보우 / 레장드팡 / 레트로 / 르레트로 / 르몽뽀뽀 / 르봉빵 / 르비앙 / 리리 / 리치몬드과자점 / 리틀하우스</p>	㉘	<p>COFFEEBAKERY / CAKEHOUSE 몽마 PIZZA / 코롬방 / 코리아나제과 / 코리아크라상 / 코른베르그과자점 / 코야노니아명과 / 코야양과 / 코알라 / 콤퓨포트 / 케익타운오페라 / 크라상트리 / 크라상트리아 / 크라운베이커리 / 크라운제과 / 크랏상도레 / 크랏상사레 / 크레송 / 크리스탈21</p>
㉙	<p>마뽕드블랑제 / 마론느 / 마리제과 / 마스타바게뜨 / 만나 / 맥필드 / 모닝베이커리 / 모짜르트 / 모찰트 / 몬드리안 / 몬티니 / 몽블리앙 / MONTBLEU / 몽쁘띠 / 무등제과 / 밀타운 / 밀탑</p>	㉚	<p>트레봉 / 트레쥬르 / 튜레쥬르 / 티볼리 / 티트리스</p>
㉛	<p>바로방 / 빼게뜨리아 / 빼네뜨리명과점 / 빠니몽드 / 빠리장 / 빵굽는 쉘프의 꿈 / 빵굽는 작은 마을 / 빵도레 / 빵조은 / 빵드비 / 베르사이유제과점 / 베이커리 / BAKERYMONDRIAN / 벤치타임 / 뽕띠에 / 보네뜨로 / 보람베이커리 / 부케도로 / 브니엘과자점 / 브레드피아 / 브로첸 / 브루트하우스 / 브르봉 / 브리오슈 / 브리오시도레 / 브리오시사레 / 브씨엘 / 브씨엘드파리 / 브씨엘드프랑스 / 뷔띠가또 / 뷔레즐 / 뷔리앙떼과자점 / 블랑제리데베에르 / VIDEFRANCE / 비발디 / 뽀에르 / 비엔씨</p>	㉜	<p>파란나라 / 파랑새 / 파리바게뜨 / 파리바게뜨 / 파리크라상 / 파리크라방 / 파티니 / PATIO / 판도리노 / 팔루아니바게뜨 / 팡도르 / 팡에브뉴 / POMODORO / 포르테 / 풍썰 / 풍년제과 / 프라도 / PLAZABAKERY / 프라자제과 / 주식회사 프라자제과 / 프로망베이커리 / 피터팬</p>
㉝	<p>산딸기과자점 / 삼립식품 / 삼부제과 / 상드리옹 / 상뜨비 / 상미당 / 상제르망 / 새로방 / 셋별제과 / 썩글루 / 주식회사 샬니 / 샬니의 집 / 샬니팡 / 서독빵집 / 서울크라상 / 선메리 / 썬메리 / 세잔느 / SAINTCINNAMON / 솔로문제과 / 스와니 / STARLITE / 스텔라 / 시모네빵집 / 씨제이뚜레쥬르 / 신라방 / 신라방베이커리 / 신라원</p>	㉞	<p>하비스트 / 하안풍차 / 하이델리 / 하이밀 / 하이제 / 한상민과자점 / 할렐루야 / 주 화과방 / 향남빵 / 후레쉬나 / 휘낭시에</p>
㉟	<p>산딸기과자점 / 삼립식품 / 삼부제과 / 상드리옹 / 상뜨비 / 상미당 / 상제르망 / 새로방 / 셋별제과 / 썩글루 / 주식회사 샬니 / 샬니의 집 / 샬니팡 / 서독빵집 / 서울크라상 / 선메리 / 썬메리 / 세잔느 / SAINTCINNAMON / 솔로문제과 / 스와니 / STARLITE / 스텔라 / 시모네빵집 / 씨제이뚜레쥬르 / 신라방 / 신라방베이커리 / 신라원</p>	<p>※ 이 리스트는 99년 9월 21일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상호만을 모은 것으로 등록된 상호 중 제과점과 관련된 것만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임.</p>	